

朝鮮後期 兩班官僚의 任用·昇進· 轉補 事例分析(朝鮮後期 官階· 官職의 除拜陞遷考)

李鍾日
(大檢察廳 事務局長)

A Study on Public Personnel Management System
in the Later Period of the Lee Dynasty

Jong-Il Lee
Director of Secretarial Bureau, Supreme Public Prosecutor's Office

In the later period of the Lee Dynasty, the public personnel administration ran completely out of the established principle. The most serious irregularity may be about the transfer of high rank officials: Many high rank officials experienced the transfer of their positions 40 times within 3 years in average, meaning that each official was transferred in one month or two. No wonder they could not understand the contents of their new jobs. Thus, they had no other way than to rely on lower-level bureaucrats, since these bureaucrats remained almost permanently in their positions. Moreover, the rank system itself was much hurted the practice that many high-rank officials in symbolic higher-level positions preferred important lower-level positions. This practice gave a severe blow to the class system of the dynasty: one's official rank was no more matched with his social status. All these were parts of factors which caused the slow destruction of the noble class in the later period of the Lee Dynasty.

I. 序 言

朝鮮後期의 官僚制度에 관한 先行研究는 적지 않았지만 具體的으로 兩班官僚들의 任用·昇進·轉補가 어떻게 行하여졌으며 制度와 現實間의 乖離結果가 어떠하였는가 하는 點에 관한 深層의 事例分析은 많지 않았다.

本稿에서는 國立中央圖書館 所藏의 教旨와 教

牒中 18, 19世紀 兩班官僚 7명의 及 538枚를 分析
檢討하므로서 그 당시의 官僚界의 實相을 알아
보고자 한다. 對象人員의 選定은 無作為 抽出方
式이었으며 그以外 人員에 대한 教旨內容도 같
은 趨勢를 나타내고 있다.

周知하다시피 朝鮮王朝는 朱子學의 身分秩序
下에서 土地經濟를 基盤으로 國政을 運用하였던
封建官僚國家였다. 비록 形式的으로는 王이 萬機
를 握攬하는 絶對君主體制였으나, 實際 國政運營

의 擔當者는 官僚들이었다. 또한 在野士族에게도 广汎하게 言路가 開放되어 있어서 儒疏形式으로 國政遂行에 參與할 수 있었다. 그래서 政權을 擔當하고 있던 高位官僚과 할지라도 國家權力を 恣意로 行使할수는 없었고, 오히려 在野士族과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던 士林出身의 下位官僚(政曹의 郎官, 王堂, 台諫, 翰林, 史官등)가 國政에 미치는 영향력이 더욱 커졌다.

그러나 朝鮮後期 老論一黨獨裁政權이 確立되자 多數의 善類들은 在野로 隱退하고, 中央政界에는 탐욕스러운 權貴들이 남아서 國政을 운영하였기 때문에 諸般矛盾이 累積되고 있었다. 歷史의 發展法則을 理解하지 못하고 儒教의 循環史觀에 젖어 있던 執權官僚들은 變化하는 狀況에 適應할 能力を 잃고 그저 形而上學의 理氣哲學의 精神世界에만 沉溺되어 있었거나 無價值한 詩賦의 喻誦에만 寧日이 있었다. 더구나 中央部處의 兩班官僚들이 朝除夕遞式으로 人事移動이 되고 있어 비록 實務에 意欲이 있는 者들이 있어 맡은바 所任을 다하려고 하여도 그들이 일할 수 있는 與件이 具備되지 않고 있었다. 그래서 行政과 司法의 實務權限은 일에 밝은 中人이나 吏胥에게 돌아갔음을 不可避하였다. 中央吏胥들은 대개同一官司에 長期勤續을 하였고 執權勢力과 깊은 人間의 紐帶關係가 形成되고 있었으므로 政權이 그들에 依하여 지탱되고 있다고 할 程度로比重이 커졌다.

한편 일찌기 中央政界를 떠나, 農村으로 돌아갔던 善類官人們의 後孫은 代가 내려올수록 貧困해져서 良人인 農民과 다름없는 生活을 하게 되었다. 19世紀 全國各地에서 일어나 民亂의 主體는 이들 畫耕夜讀의 農村知識人 즉 士族出身 農民들이었다. 또한 在野 士族中에는 朝鮮後期의 政治·經濟·社會的 危機를 克服하기 위하여, 官制改革을 비롯한 諸般制度의 改革案을 提示하였고 經世致用과 利用厚生을 主唱하였던 實學者들이 있었다. 그들은 朱子學의 世界觀에서 完全히 벗어나지는 못하였으며, 더구나 古代 周禮思想과 洗滌學의 儒教精神으로 回歸하자는 點에서 反動의 이란 批判도 나올수 있었지만 그들의 主張속에서 近代志向의 民權思想도 發見되고 있으므로 韓國近代化의 萌芽와 韓國史의 内在的 發展契機

를 거기서 찾고자 하는 學者도 있다. 如何間 實學者들의 諸般 改革案은 20世紀에 와서야 再評價되었을 뿐 그 당시 爲政者에게 받아들여진 것은 아니므로 本稿에서는 다루지 않기로 한다. 따라서 여기서는 그 당시의 現實的인 人事制度와 그 實際運用事例를 具體的으로 살펴보는 데 그치기로 한다.

II. 朝鮮王朝의 官階·官職體制 와 人事權의 行使者

太祖實錄에 依하면 朝鮮의 官制는 麗制를 이어 받은 것이다. 그리고 麗制는 唐制를 모방하여 만들었다고 高麗史百官志에 明記하고 있다. 唐制는 周禮의 三公(太師·太傅·大保), 六官(天官家宰·地官司徒·春官宗伯·夏官司馬·秋官司冠·冬官司空)制에 根源을 두고 있으며 그것이 秦漢과 魏晉南北朝를 거치는 동안 三師, 三公, 六部(吏·戶·禮·兵·刑·工)로 定着되어 東洋各國의 政務機構와 官僚組織의 根幹을 이루게 된 것이다. 또한 九品官階制는 周官 九命制에 源源하고 있는데, 丁若鏞은 經世遺表 天官修制에서 「周公制禮最嚴於大夫·士之等級」이라 하여 大夫와 士(郎官)의 峻別을 強調하고 있다. 唐制와 麗制에서의 文散階는 五品以上이 大夫, 六品以下가 郎(士)이었으나 元나의 干涉에 의한 高麗 忠烈王 34년의 官制改革으로 四品以上이 大夫, 五品以下가 郎으로 되었다. 이것이 그대로 朝鮮王朝의 官階體系로 넘어 온 것이다.

朝鮮王朝의 官階는 流品을 正·從 18品으로 나누었고, 6品以上の 경우, 上下 資級으로 다시 나누었다. 西班官階의 1~2品 資級은 별도로 두지 않고 東班의 것을 使用하도록 하였다. 18品階 31個 資級中 正 3品 通政大夫 以上과 折衝將軍 以上을 堂上官이라 하여 그것이 顯官일 경우, 많은 特典을 부여 받고 있었다. 堂下官은 正 3品 通訓大夫 以下와 禦衛將軍 以下를 말하는데, 그중 從 6品 宣務郎 以上과 秉節校尉 以上을 參上官 또는 參內官이라 하였고, 正 7品 務功郎 以下와 迪順副尉 以下를 參下官 또는 參外官이라 하였다. 堂上 堂下의 區分은 원래 朝議를 행할때 堂上의 交椅에 앉을수 있나에 따라 나누어진 것이

라 하나, 朝鮮王朝에서는 그것이 잘 지켜지지 않았음이 太宗實錄에 나타나 있다. 즉 堂上官과 郎官이 交倚에 同坐하여 일을 봄으로서 中國制度와 麗制를 잊고 있으니 지금부터는 郎官은 議事가 있을 때는 升堂하되 堂上官 밑자리에 앉아 일을 본후 本廳에 돌아가서 命을 받들어 公務를 遂行해야 한다고 禮曹에서 上疏하고 있다. 그러나 그것이 朝鮮成宗朝以後, 郎官權의 強化로 잘 履行될 수가 없었음을勿論이다. 郎官權에 관해서는 뒤에 詳述하기로 한다. 그다음 參上 參下의 区分은 朝參에 參與할 수 있는 與否를 基準으로 한 것이라 하나, 太宗實錄에 「前朝參外 不入朝班 今者參外 皆參朝列」이라 하여 高麗에는 參外官이 朝班에 들지 않았으나, 朝鮮에서는 모두 朝列에 參加하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流品內의 官員에 대한 任用形式은 4品以上(大夫과 將軍)은 教旨, 5品以下是 奉敎로 되어 있다. 教旨는 처음 官敎라 하였던 것으로, 「施命之寶」라고 하는 鐘寶가 押捺되어 있었다. 奉敎는 銓曹에서 王命을 받들이 내린 教牒이란 意味가 内包되고 있는데 「吏曹之印」(文) 또는 「兵曹之印」(武)이 押捺되어 있었다.

官職은 廣義로 流外 雜職이나 吏胥職을 包含하여 말하는 경우가 있으나, 普通으로 流品內의 것만 意味한다. 流品에는 文科를 通하여 入仕하는 東班職과 武科를 通하여 入仕하는 西班職 뿐만 아니라 山林에서 천거된 隱逸, 雜科를 通하여 入仕하는 專門職 및 門蔭을 通하여 入仕하는 蔭職등이 있었다.

流內 官職도 官階와 같이 9品 18階로 되어 있으나 官品과 職品이 不一致하는 경우가 많아서 行守法이 생겼다. 上位官階者가 下位官職에 任命된 것을 行職이라 하였고 그 反對의 경우를 守職이라 하였는데 朝鮮後期에 이르면 行職이 壓倒의 으로 많아서 그것이 實職과 같은 概念으로 認識되기도 하였다. 如何間 流品內의 官職을 實職과 虛職으로 大別하여 볼 수 있는데, 實職에는 正職과 遜兒職이 있고 虛職에는 影職과 散職이 있었다.

正職은 職事が 뚜렷한 顯官의 職囊을 意味하는데, 議政府와 經筵, 吏·禮·兵曹등 政曹의 堂上官과 郎官, 玉堂과 臺諫, 承政院등의 官員, 史官

과 翰林등 華·清·要職과 其地大小 官司의 官職을 말했는데 이 時代의 官職의 特色은 品階가 높을 수록, 또한 清要職일수록, 兼職이 많았다. 兼職의 職囊는 特定되어 있는 것도 있으나, 普通의 경우 本職의 職囊였던 것이 特別한 경우에만 兼職으로 되는 것도 있다.

遞兒職은 麗制와 朝鮮國初의 官制에는 없던 것으로 世宗때부터 制度화한 것이라 한다. 遜兒職의 成立은 麗末 添設職等으로 인한 官職의 濫授와 虛職化한 軍職에 대한 對策에서 비롯된 것이다. 經國大典에 나타난 遜兒職의 種別은 東班遞兒와 西班遞兒로 大別 할수있다. 東·西班遞兒 중에는 醫·譯·算·觀象·律·寫字 등 技術 other 專門職務에 從事하는 中人階層의 遜兒와 彭排·隊卒·破陣軍등 兵種에 屬한 賤人등의 雜職遞兒도 있었지만, 大部分은 兩班特殊 軍兵의 受職斗, 文武兩班官僚의 任用前後 및 待期發令時, 祿俸을 주기 為하여 活用하는 西班遞兒(軍銜遞兒)였다. 特히 朝官의 隨闈敍用을 위한 豫備遞兒로 活用되는 軍銜遞兒였다. 特히 朝官의 隨闈敍用을 위한 豫備遞兒로 活用되는 軍銜遞兒職은 正職의 4·5倍가 되었다고 하며 高位官階者가 下級軍職을 받아서 官品의 高下概念에 混線이 있게 되었다. 그러한 現象은 朝鮮前期 世祖가 不道德한 方法으로 政權을 奪取하면서, 이에 協調한 多數人에게 官階·官職을 分配하는 過程에서 생겨난 것이라 한다. 즉 實職은 有限하여 함부로 올려줄 수 없었으나 官階는 無制限으로 올 수 있었기 때문에 濫授하다보니, 결국 官品 인프레가 되어, 堂上官階를 가진 者가 심지어 8·9品의 末端軍職까지 갖게 된 것으로 보이며 그것을 後代에서 그대로 담습한 것이다. 潘溪柳馨遠은 遜兒職에 관해서 「無定祿而四時考講 以其分數 遜相高下付祿 謂之遞兒」라 하여, 定祿이 없고 四時考講하여 그 成績으로서 高下를 서로 바꾸어 付祿한 것이라 하였다.

다음으로 虛職을 살펴 보기로 한다. 影職이나 散官職 등 虛職中에서는 納粟授職과 老職이 매우 많았음은 朝鮮後期 戶籍大帳 속에서 얼마든지 確認될 수 있다. 그러나 納粟이나 老職등으로 堂上官階를 받아도 免賤·除役등은 論外로 하고 士族으로陞班되는 것은 아니었다고 생각한다.

納粟補官은 國家에서 곡식을 받고 벼슬을 관賣官政策에서 일어진 것으로서 항상批判의 대상이 되어 왔던 것이다. 宣祖實錄에 依하면 賤人們까지도 中樞院 僉知事(正三品)의 官號를 가졌고, 無知몽매한 백성들까지도 參判의 資級(從二品 嘉善大夫)을 얻었을 정도로 國家公器의 가치가 땅에 떨어지게 되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納粟補官制度는 일찌기 BC 2世紀頃 中國의 漢文帝때부터 確立된 것이며, 그 당시 君臣들은 그것을 매우 좋은 財政政策으로 받아 들였다. 우리나라에서는 高麗時代 末期에 國家財政不足과 餓民賑恤 및 軍糧未를 充當하기 위하여 納粟補官을 시행하였음을 나타내고 있다.

朝鮮時代에서 納粟補官問題가 論議된 것은 世宗朝였으나 그施行은 成宗때라 하는데 成宗實錄에 依하면 徐居正의 建議에 의거, 王은 該曹로 하여금 的논해서 보고하도록 하였다. 그후 朝官들은 賛反兩論을 거듭하다가 成宗 16年 8月 壬辰에 이를 實施하였다고 한다. 그후 明宗 8年, 慶尚道地方의 餓民救濟를 위하여 納粟者를 모집하였으며 宣祖 26年, 戸曹의 建議에 따라 納粟事目이 公布되고 納粟帖, 空名帖의 賣買가 盛行하게 되었다.

朝鮮後期에는 光海朝와 仁朝代에 약간의 賣官事例가 있었고 孝宗때는 주총하였으나, 顯宗·肅宗年間에는 凶年이 되면 빈번한 賣官鬻爵이 시행되고 있었으나 肅宗 16년의 餓饉때에는 嘉善·通政·同知·僉知·判官·別坐·察訪·主簿·僉使·萬戶·護軍·司直등 空名帖 二萬장을 八道에 分送하여 賣却트록 하였다. 이러한 納粟補官政策은 朝鮮後期의 安定期라는 英正時代에도 그대로 存續하였는데 惠政要覽에 의하면, 正祖 �即位年에서 同王 17년까지 18年間 都合 23,310枚를 發給한 것으로 나타나 있다. 그結果 18世紀末에 이르면 家家戶戶에 敷帖이 있을 정도로 그 價值가 暴落하여 願賣者가 없어 強賣現象까지 생겼다고 한다

그 다음 老人職에 관하여 經國大典에 의하면 「年八十以上 勿論良賤除一階」라 하여 80歳가 되면 良人, 賤人을 막론하고 한 品階를 제수한다는 것이다. 이는 「人生七十古來稀인데, 人間八十無賤人이라」는 儒教의 人生觀에서 나온 것이다, 오랜 傳統을 가진 敬老思想에서 由來되었다고 하겠

다. 東洋社會에서 敬老思想이 形成된 것은 秦漢時代까지 소급하여 생각할 수 있다. 秦始皇이 天下를 統一한 후, 全農民을 有效하게 統治하기 위하여 20個의 官階組職으로 둑어서, 特別한 功勞가 있을 때는 勿論, 一般的인 경우에도 年功으로 加階하여 高齡者가 上位爵級에 있도록 하였다. 이러한 秦制를 漢帝國이 계승하여 奴婢等 賤人을 除外한 모든 農民男子에게 1級에서 8級까지 官爵을 주어 老少의 尊卑秩序를 確立하여 젊은이는老人에게 絶對 服從토록 하였다.

이러한 秦漢代의 官階制度는 「長幼有序」란 儒教의 倫理觀과 함께 唐代를 거쳐서 高麗에 들어왔으며 朝鮮國初에 老人職으로 法制化된 것이라 생각된다.

老人職은 世宗朝 以後 朝鮮末期까지 無數히 授與되고 있었음이 朝鮮王朝實錄 其他史料에 나타나있다. 따라서 官階以外 官職까지 주자연職塞가 不足하여 影職을 除授할 수밖에 없었는데, 그렇게 하면 名實이 不附合하므로, 世宗 26年부터, 職銜없이 散官(官階)만을 除授하도록 하였다. 朝鮮後期 正祖의 大典通編에 依하면 「常賤老職勿許崇政 曾經正卿外勿許輔國」이라하여 常民과 賤人에게는 비록 老人職일지라도 崇政大夫(從1品)까지는 줄 수 없게 하였고, 또한 士族官僚라 할지라도 長官級인 正卿(正2品)을 거친 사람以外는 輔國崇祿大夫(正1品)를 除授하지 못하도록 制限하여 多少나마 官階秩序를 바로 잡고자 하였다. 그러나 常賤人일지라도 正2品 正憲大夫까지 줄 수 있고 正卿을 거치지 않은 士族에게는 從1品 崇祿大夫까지 줄 수 있다는 것은老人이 얼마나 尊待받고 있었는가를 짐작케 하는 것이다. 더구나 朝鮮王朝末 高宗때 法典인 大典會通에 依하면 「士庶百歲人 直超崇政」이라하여 百歲만 되면 士人이건 庶民이건 바로 從1品 崇政大夫의 資級을 받는다고 하였다.

그러나 朝鮮은 엄격한 末子學의 身分秩序가 維持되었던 社會였으므로 官品의 高下보다, 身分의 清濁을 더 重視하였으므로 外形上은 敬老至上인 듯하였으나 實際上은 젊은 郎官들이 實權을 잡고 國務에 重大한 영향력을行使하였다 것이다. 특히 吏曹, 兵曹, 祿曹의 郎官과 承政院 注書등의 後任者 自薦制와 弘文館 校理 修撰등 任命時의

弘文錄闈點制, 藝文館 檢閱의 任用時의 翰林本館
圈點制, 五品以下(外官인 경우 四品以上 包含)
朝官任用時의 臺諫의 署經權 등으로 人事權의 比
重이 王이나 堂上官들에게 보다도 그들 郎僚들에게
게 있었다.

勿論宰相府나 六曹의 堂上官들에게 人事權에
全然 關與할수 없었던 것은 아니고 一次의 人事權行使者인 銓郎과 銓曹를 監視·監督할 수는
있었던것 같았다. 特히 朝鮮後期 文武高位官職者の
의 合議體機關이었던 備邊司의 權限은 強大한 것
이었고, 그들의 銓曹에 대한 統制機能 또한 過少
評價할 수는 없었다고 생각된다. 燃藜室記述에
의하면 堂下官을 堂上守令에 任用하자면 三司出身者가
아니면 注擬할 수 있는데도 不拘하고 李廷機를 江界府使(堂上守令)에陞拜시킨 吏曹의
處事가 不當하다고 하여 備局에서는 同人을 改差하고
吏曹堂上을 推考하였다는 것이다. 그렇다고
備邊司가 人事權을 直接行使한 것은 아니었다.
原來 堂上官을 任用함에는 循資法이 適用되지
않았으며 臺諫의 署經도 거칠 必要가 없어 王이
自由롭게 任用할 수 있도록 되어 있었으나 實際上
銓郎과 臺諫에 依한 많은 制約가 있었던 것이다.

銓郎權의 形成過程에 관하여 좀더 具體的으로
살펴 보기로 한다. 實際 朝鮮前期부터 人事權을
둘러싸고 上下官僚間에 심각하게 對立, 葛藤하여
오다가 朝鮮中期에 이르러 黨爭發生의 原因이 되
기도 하였다는 것은 周知하는 바인데 이러한 現象은 朝鮮王朝 前期 成宗때부터 胚胎되었다고 할
수 있다. 成宗實錄에 의하면 人事權은 銓曹에 맡
겨行使해야 하는데 吏曹, 兵曹, 禮曹의 郎廳이나
承政院注書들이 同僚들을 自薦하고 있으니 政務
가 여러 곳에서 나와, 나중에 朋黨化될 것이라
하였다. 이와같은 郎官權의 確立은 中宗때 絶頂에
達했다고 볼 수 있다. 中宗實錄에 의하면 天下國家가 굳건히維持되자면 尊卑의 序列과 上下
之分이 있어야 하는 것이며, 그것은 官爵이 上下로
나누어져야 함에도 不拘하고 後進이 先輩에게
오만하게 대하고 郎官이 堂上官을 모욕하며 小儒
가 卿相을 論하니 人倫과 禮義가 무너지고 붕괴
되었다. 이것은 卑官小臣이 人事權을 가졌고 또
한 國家政務가 밀에서 많이 나왔기 때문이다 라

고 하였다.

이와같은 郎官權의 確立은 士林들의 登場과 言路擴張에 起因했다고 볼 수 있으며, 특히 趙光祖一派의 政界進出과 깊은 關聯이 있다고 하겠다. 비록 己卯土禍로 그들은 肖清되었으나, 在野知識人의 廣汎한 支持를 받고 있던 이른바 己卯名賢들의 意志는 後繼者들에 의하여 이어지고 있다. 明宗實錄에 의하면 밑에 있는 著가 上官의
命을 듣지 않고 도리어 上官이 밑의 사람을 두렵게 여기며 六卿以上이 無能하게 되어 下官이 모두 獨斷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결국 宣祖에 이르러 黨爭이 發生하자 王은 1583(宣祖 11年) 7月
分黨之禍가 대개 吏曹郎官의 薦望制度 때문이라는 것을 알고 「今後罷其規式」이라 하였다.

여기에 대하여 都承旨 朴謹元등은 上啓하여 郎薦制革罷를 反對하였다. 즉 銓曹의 郎薦制는 法典에 등재되어 있지 않으나, 옛날부터 規例로 行해지고 있었다는것, 금번에 만약 이를 폐지하고 당상관으로 하여금 薦望하게 한다면 混進雜用之患이 많을 것이며,一時에 清論이 모두 없어질 것이라는것, 하물며 銓長者(吏判·兵判)는 모두 年高한 先進이라, 新進을 뽑아 臺閣에 배치할 때 만약 郎僚들에게 그 可否에 대한 자문을 받지 않는다면 痞用舍할 것이며, 權奸이 足히 誤國할 것이라 하였다. 그래서 郎官의 薦望制는 폐지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刑書와 參判의 任用問題까지 銓郎들이 干與하고 있었다.

仁祖代에 이르면 郎官自薦制의 폐단이 국도에
達하여 이를 혁파하자는 주장이 強力히 擡頭되고
있었으니 燃藜室記述과 仁祖實錄에 의하면 郎薦制度는 吏曹·兵曹의 堂上官을 包含한 兩銓機構
그 自體의 職務를 잊게 하는 것이고, 吏·兵曹의 郎官들이 自薦하게 되니 堂下 清要職의 추천과 任
用이 모두 郎官의 손에서 나왔으며 이러한 銓郎의 權限이 偏專하여 每番의 郎薦마다 年少한
名流가 서로 뽑아내고, 서로 배척하여 黨論의 根柢가 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郎官의 薦望權은 그
때 폐지되지 않았기에 다시 104年 後인 英祖17年(1741)에 銓郎의 通清之規를 혁파하리라는 王命
이 있게 되고, 英祖 19年(1973)에는 侍從을 거친
사람을 吏曹郎官에 추천하여 任用토록 명령한 것이다. 이로서 銓郎의 人事薦望權은 完全히 박탈

되고 그것이 權貴의 손에 集中됨으로써, 그후 銓郎은 臺諫과 더불어 별볼일 없는 자리(冗官)에 不過하게 되었으며 國家의 公器인 官職은 一黨의 專有物이 되고 말았다. 18世紀末 한때 正祖의 治世中, 人材를 고루 登用코자한 試圖가 있었지만 構造의 矛盾 때문에 그것이 制度로서 定着되지 못하고, 한결음 더 나아가 19世紀 老論系 戚族政治時代에 이르러 官職이 一黨의 專有物에서 다시 權貴數家の 私有物화하였다. 그래서 在野 士民들의 支持를 衰失하게 된 戚族政權은 亡國의 길로 치닫게 된 것이다.

III. 朝鮮後期 官階·官職의 除拜陞遷 事例分析

朝鮮後期의 老論一黨獨裁政權은 自黨의 永久執權을 위하여 먼저 郎官 薦望權을 없애, 官僚들에 대한 人事權을 獨占하고, 臺諫의 傀儡化와 儒疏禁止措置 등으로 言路를 봉쇄함과 同時に『勿失國婚 崇用山林』이란 黨是 아래 王室과 거듭되는 血緣關係를 維持하면서 在野 不滿勢力を 높은 벼슬로 褙유·포섭코자 하였다. 在野勢력의 代表者를 儒賢, 隱逸 또는 山林이란 이름으로 徵召하여 科擧及第出身인 官僚들의 腹자리에 앉혔는데, 茶山丁若鏞은 이를 다음과 같이 表現하였다. 즉 첫째, 儒賢(經明行修之人)을, 둘째, 科擧出身者(治理才諳之人), 셋째, 藪官을 뽑아야 한다는 그 당시 知識人社會의一般的認識傾向을 나타내고 있다. 그러나 실제상 儒賢으로 徵召되어 受職한 사람은 極少數였기 때문에 論外로 하고, 清宦과 顯職의 絶對多數는 科擧出身官僚였으므로 本稿에서는 이들의 官歷을 分析, 官僚社會의 一斷面을 알아내고자 한다.

첫째 姜銑은 1675年 文科及第當時에 이미 藪官로 正5品 通德郎의 官階를 갖고 있었으나 官職은 받지 못하고 있었다. 그는 文科及第 2年後인 1677年 3月 29日 비로소 官職을 받았는데 그것도 從9品 龍驤衛 副司勇이란 遜兒職이었다. 그 당시 그의 官階는 이미 正3品 離侮將軍이었다. 그 후 그는 한달이 끝나서 從7品 副司正으로 올랐지만 6개월 후 다시 從9品 副司勇으로 내려갔다. 2년후 그는 從6品副修撰, 正6品正言, 正5

品持平等 正職과 從6品 副司果, 從5品 副司直등으로 升進하였지만 2개월 후 다시 從6品 副司果로 降任되었다. 1680年~1689年初까지 10年間의 그의 官歷은 나타나 있지 않는데 그期間은 庚申大黜陟에서 己巳換局까지의 南人系 追放期로서 아마 姜銑은 南人系 또는 親南人系 人物로서 官職을 받지 못하고 在野에서 때를 기다렸는지 모른다.

如何間 姜銑은 文科及第한지 14年後가 되는 1689年 閏3月 清宦인 校理를 거쳐 1689年 6月 堂上官이 되었다. 그는 通政大夫, 刑參議가 된지 네달만에 承政院 右副承旨가 되었고 거기서 15일, 그 다음 副司直 2일, 刑曹參議 8일, 兵曹參議 7일 등으로 짧게 있다가 遜職되었고, 이어서 左·右副承旨, 同副承旨, 右承旨, 曜州牧使, 左副承旨, 右承旨, 觀察使, 判決事, 右承旨, 左承旨, 右承旨, 遜兒職, 刑曹參判, 遜兒職, 同知中樞府事, 刑曹參判, 遜兒職, 兼副摠管, 兼同知義禁府事, 同知中樞府事, 遜兒職, 漢城左尹, 同右尹, 刑曹參判, 遜兒職, 刑曹參判……등順序로 轉補되었으나, 일찌기 李暉光이 말한 그대로 可히 朝更暮遞라 할程度였다. 一部學者는 그것이 芝峰의 과장된 表現이라 생각한듯 하였으나, 이번의 教旨分析에서 證明된 바와 같이 그것은 조금도 과장된 이야기가 아니었다. 그러한 現象은 朝鮮後期의 下代로 내려올수록 더했다고 생각된다.

그 당시의 士族官僚들은 儒教經典에 立脚한 高次元의 理氣哲學 내지 禮學講論이나, 史書에 立脚한 治亂의 故事나 王道만 論하면 되는 줄 알았고, 行政·司法의 實務는 中人과 吏胥의 일로錯覺하였기 때문에 所管官司의 職務를 把握하려 하지 않았다. 그들의 잣은 人事移動에도 不拘하고 國家機能이 마비되지 않은 것은 經濟, 司法, 行政, 醫藥 其他 專門職과 實務職에 從事하던 中人 및 吏胥가 長期勤續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 점에 관하여 星湖 李漁은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즉 오늘날 諸官司의 官員이 오직 자주 轉補하여 利益만을 圖謀하고 公務에 마음을 두지 않아, 무릇 憲章과 條令에 관해서는 알지못하여 머리를 속이고 눈을 비비면서 앉아,胥吏에게 國政을 맡기고 있었다. 公卿大臣이 入對前席에서 반드시 曹吏에게 물어서 일을 처리하고 서는 부끄

럽게 생각하지 않으니 이것은 무슨 道理인가. 俗諺에 이르기를 朝鮮은 脅吏로 인하여 망한다고 하나 나는 國家가 脅吏에게 의지하여 猶存하며 이들이 없다면 장차 온갖 法度가 없어질 것이라 하였다.

원래 經國大典에 의하면 東班京官의 경우 『六品以上仕滿九百, 七品以下仕滿四百五十一遷官』이 원칙으로 되어 있으며 堂上官, 臺諫, 遷兒職, 無緣官 其他一定職位에 대하여는例外로 한다는 것이었으나, 실제 운용상例外가 원칙으로 되고 말았다. 또 燃藜室記述에 이르기를 『我朝則一年兩都目外 隨闕隨差 或至逐日 爲政與古異矣』라 하여 朝鮮王朝에서는一年에 두차례의定期人事移動以外 자리가 빛매마다 수시로 혹은 날마다人事移動을 하였으니 예법과 다르다는 것이었다. 위에例示한 姜銑의 경우에도 守令·方伯등地方官이었을 때를 除外하면 한補職에서 1년을 넘기는 경우가 드물었고, 한두달 혹은 며칠間勤務하다가 he補職으로 옮겨갔으니 所管職務를 파악하기는 어려웠을 것이며 自然히 實務權限이吏胥들에게 돌아갈 수 밖에 없었을 것으로 생각되었다. 그의 빠른 순환보직官歷中에서 특히 눈에 띄는 것은 前에 거쳐 갔던 补職을 몇번이나 되풀이 해서 补任한事例가 많았다는點이다. 위 姜銑의 경우 刑曹參判을 일곱번이나 맡았고, 都承旨 4回를 비롯하여 左右承旨등을 數次 맡았다. 그 당시 官僚들의 質은 任期와 같은 交遞事實을 皮相의 으로 본 先學들은 職橐가 少數인데 任用候補者가 많기 때문에 인식하는 경향이 있으나 그렇다면同一人을 이미 거친 職位에 數次 任用한事實을 說明할 수 있게 된다. 이는 아마도 그 당시 爲政者들이 儒教의 循環史觀에 立脚하여 『天運循環無往不復』이란 생각을 하였기 때문일 것이다.

둘째 通德郎(正5品) 鄭靈柱는 1707년에 文科及第하여 2年後 朝奉大夫(從4品)의 官階를 받고, 承文院 副正字(從9品)의 正職을 받았다. 文科及第자의 初入仕의 경우 甲科(3等以內) 及第出身자는 實職, 6品~7品에 直受되지만 乙科 丙科出身자는 承文院과 成均館 및 校書館에 分屬되어 一定期間 權知로 있다가 正職 9品職을 받도록 되어 있었는데 門閥家의子弟는 承文院으로 소속시켜 이를 槐院分館이라 하였고 시골양반인 鄭儒는 成

均館에 소속시켜 國子分館이라 하였으며 庶孽·吏校子姪은 校書館에 分館시켜 藝閣分館이라 하였다. 따라서 鄭靈柱는 承文院에 分館된點을 보아서 京班門閥家出身이었다고 짐작되는데 最終官階·官職이 堂下官에 그치고 말았다. 如何間그는 副正字로 任官된지 두달만에 資級이 一資 올라 朝散大夫(從4品上)가 되었고 半年만에 正8品著作으로 升進하였으며, 거기서 다시 또 半年만에 從7品 奉常寺直長으로 升進하였고, 官階도 正4品奉列大夫로 陞資하였다. 그는 1710年 한해 동안에 承文院 博士(正7品), 成均館典籍(正6品)兵曹佐郎(正6品)등으로 补職이 變更되었다. 그 후 그의 官階는 11개월만인 1711年 1月 6日 奉正大夫(正4品上)로 陞資되었으나 20일만에 다시 奉列大夫(正4品下)로 降資되었다. 官職은 兵曹佐郎 3개월만에 禮曹正郎(正5品)으로 升進함과同時に 同日字로 吏曹正郎(正5品)으로 轉補되었 11으나 2개월만에 禮曹正郎으로 復歸하였고 거기서 두달이 못되어 遷兒職으로 옮겨갔다. 거기서 3개월후 司憲府持平으로 발탁되었다가 7개월餘에 다시 遷兒職을 갖게 되었다. 그는 1년 9個月동안, 副司職·副司果 등 遷兒職을 받았지만 보름간의 高山道察訪을 겸직으로 있었던것以外에는 全然職事が 없었던것 같았다. 한편 그후 그의 官階는 西班資窮인 正3品 禦侮將軍까지 올랐다. 그다음 그는 珍山郡守, 司憲府掌令(正4品), 三陟都護府使(從3品), 成均館司藝(正4品), 通禮院相禮(從3品), 尙衣院正(正3品), 司諫院獻納(正5品)을歷任하였다. 姜銑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堂下官에서 끝난 鄭靈柱의 경우에도 地方官이었을 때를 除外하면 한補職에 半年以上勤續한 경우가 드물었고 거의 몇달 또는 며칠 동안만 근무하다 옮겼으며 이미 거친 补職에 거듭 再任用되었던事例도 發見된다.

셋째 權瑞東은 1727年 生員身分으로 文科及第한후, 從7品 奉順副尉 龍驤衛副司直으로서 遷兒祿을 받다가 3餘年時인 1730年 成均館으로 分館되어 正9品 從仕郎 成均館 學諭(從9品)에任用되었다. 그가 成均館으로 分館된點으로 보아서 시골 선비出身이라 推定되는데 한달후 養賢庫奉事(從8品) 4개월후 從8品 承仕郎 成均館學錄(正9品)兼養賢庫奉事로 되었다가 거기서

다시 5개월후 正8品通仕郎 成均館學正(正8品)으로 또陞進하였다. 이로써 미루어 볼때 한資級이 올라가는데 參下官 경우陞進所要日數가 450일이란一般的인 認識度는 事實과 거리가 멀다는 것을 알수 있다.

1731年 9月~1740年 5月 間의 權瑞東의 官歷은 資料未備로 알수 없으나 1740年 5月 19일 그는 正6品 承議郎의 官階를 갖고 守職으로 正5品 禮曹正郎兼春秋館記注官에 補任 되었다가 한달후 官階가 從 4品 朝奉大夫가 超資되었으며, 또 2개월 후에는 從 4品上 朝散大夫로陞資되었지만 官職은 正6品 兵曹佐郎로 降任되었다. 이와같이 그 당시 官僚의 轉補에 있어 官職의 高下가 크게 問題視되지 않은듯 하였다. 그후 權瑞東의 官歷은 14년間의 在野生活後 正3品 通訓大夫에 올라 兵曹正郎, 瑞山郡守, 司憲府持, 平通禮院相禮(從 3品), 司憲府掌令(正4品), 通禮院右通禮(正3品)등 官職을 오르락 내리락 하다가 堂上官階 正3品 通政大夫에 올라서 遷兒職으로 從 5品 副司直을 받았던 것이다,

넷째, 尹蓍東은 1754年 7月 文科及第後 從 9品 將仕郎에서 承政院假注書, 龍驤衛副司正을 거쳐 1年後 從 6品 宣務郎, 權知承文院副正字(從 9品)에 叙任되었으니 官階가 1년만에 資級이나 올랐고 그후 그는 한달만에 世子侍講院說書(正7品)가 되었으나 5品階를 뛰어넘어陞職한 셈이다 그러나 그는 4개월후 遷兒職으로 옮겼다가 1756年 3月 承政院注書(正7品)가 되었으며 또 3개월 후 成均館典籍(正6品)이 되었다. 그다음 달에 그는 正5品 通善郎 兵曹正郎(正5品)으로陞任되었지만 곧 司諫院 正言(正6品)으로 遷職되었다. 그후 10年間 그는 言事被罪하여 在野에 있다가(放歸田里) 1765年 3月 資窮인 正3品 通訓大夫로陞階하여 弘文館副修撰(從 6品)이 되었다. 그는 곧 遷兒職으로 옮겼다가 그다음 달에 弘文館副校理(從 5品)로陞職하였다. 그후 4개월만에 堂上官으로陞任, 通政大夫 濟州牧使에 補任되었다. 그후 그의 官歷은 左副承旨(正3品), 副司直 副司果, 禮曹參議, 大司諫, 副司果, 副司直, 右副承旨, 同副承旨, 右副承旨, 同副承旨, 右副承旨, 同副承旨, 副司果, 副司直등順序로 1766년 한해 동안에 무려 15차례나 官職이 變動되었으며

이미 거쳐간 官職에 되풀이 除拜轉遷 되었다. 이러한 現象은 1767年과 1768年에도 마찬가지였는데 官職名도 兵曹參知, 左·右·同副承旨와 遷兒職, 그리고 清職中의 清職인 副提學이 交互로 거듭 除授되었다. 그는 결국 1775年 2月 從 2品 嘉善大夫 漢城府右尹이 되었고 이튿후 承政院都承旨가 되었으며 그다음 달에 京畿兵水使를 兼했다가, 그해 9月 從 2品上 嘉義大夫 京畿觀察使兼巡察使로 되었다. 5년후 그는 같은 官階를 갖고, 從 3品 潘陽都護府使를 拜受하였다. 尹蓍東의 그후의 官歷은 副司直, 漢城府左尹, 刑曹參判, 副司直, 禮曹參判, 副司直兼副摠管, 副司直, 大司諫, 都承旨, 兵曹參判등 순서로 이어진후 遷兒職(副司直)을 받고 正職에서 물러간 것으로 되었다.

다섯째 金在昌은 思悼世子의 外孫子로서 正祖의 생질이었다. 그는 光山金氏 閔閑家의 후손이었는데 15歳때인 1784年 1月 1일 藉叙로 從 7品 啓功郎 敦寧府直長에 任命된후, 官階가 累進하여 1764年 1月 1일, 從 4品 朝奉大夫가 되었으며, 1800年 9月 15일, 正3品 通訓大夫로 資窮까지 올라갔다. 官職은 司僕寺主簿(從 6品), 敦寧府判官(從 5品), 漢城府判官, 副司果(從 6品)를 거쳐 高陽郡守(從 4品) 在職時인 1801年 4月 文科及第하여, 弘文館副修撰(從 6品) 知製敎兼經筵檢討官春秋館記事官中學敎授에 除拜되었다. 석달후 그는 司諫院正言(正6品)에陞職되었고, 10일후, 遷兒職(副司果) (7일간)을 거쳐, 司僕寺正(正3品)에 特進하였다가 한달후, 弘文館校理(正5品) 知製敎兼經筵侍讀官春秋館記注官으로 轉補되었다. 그후 그는文科及第後 3年이 못되는期間에 무려 40번이나 자리가 바뀌었으며 玉堂과 臺諫 및 群少機關의 長, 그리고 遷兒職등 數席을 回轉하면서 몇번이나 되풀이 같은 補職에로陞降轉遷되고 있었다. 즉 正職과 遷兒職을 빠른 speed로 循環하면서 오르락 내리락하고 있었던 것이다. 1804年 2月 28일 그는 正3品上 通政大夫로 昇階한후,同年 3月 7일 左·右·同副承旨兼經筵參贊官 春秋館修撰官으로 任用된 이후에는 遷兒職斗 各房承旨 및 戸曹參議, 刑曹參議등 六曹의 堂上官職을 역시 빠른 speed로 循環하다가 1805年 12月 從 2品 嘉善大夫의 資階에 올랐고, 1808年 1月에는 從 2品上 嘉義大夫 京畿觀察使兼 兵馬水軍節度使

水原留守, 開城留守, 江華留守, 廣州留守, 巡察使로 昇進하였다. 3년후인 1811年 1月 正 2品 資憲大夫로陞階한 후 遞兒職에 잠시 머물러 있다가 刑曹判書, 工曹判書, 大護軍, 漢城府判尹, 大司憲, 五衛都摠管, 知中樞府事, 知敦寧府事등의 자리를 돌아가면서 轉補된 것이다. 1815年 10月 3日 正 2品上 正憲大夫로陞階된 후에도 그는 같은 자리를 몇번씩이나 循環하였고 또 1817年 從 1品下 崇政大夫로陞階된 후의 補職現況도 같았다. 결국 그는 1835年 5月 最高의 品階인 正 1品 輔國崇綠大夫에陞階되었다. 그러나 그의 官職은 如前히 兵曹判書, 知中樞府事, 兼判義禁府事, 吏曹判書, 判中樞府事등 主로 2品職을 行職으로 되풀이 拜受하였다.

만사람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였지만 尹蓍東파金在昌의 官歷을 통해서 確認할 수 있는 것은 짧은 在職期間 때문에 本職의 業務內容 조차 握하기 어려웠을 텐데도, 承旨나 玉堂등 清顯職에任用될 때 一定한 兼職이 附加되어 있었다.

여섯째 李培源은 閑良으로서 1728年 10月 武科及第한 사람이었다. 武科는 文科나 生進科와 달라서 應試하는데 있어 身分上의 制約이 別로 크지 않았으므로 士族이 외, 그 庶子, 中人, 吏胥, 良人등의 出仕路가 되고 있었다. 그러나 武科는 朝鮮後期에 이르러 合格者를 大量輩出 하였으므로 그 價值가 極度로 떨어지고 있었다. 따라서 實職에任用되는 경우는 特別한 軍功이 있거나 或은 卓越한 武才가 있든지 아니면 門閥家出身이 있을 경우에 局限된다고 하겠다. 李培源의 家系는 確認할 수 없으나 宣傳官을 지낸 點으로 보아서 士族임에는 틀림이 없는 것 같았다. 如何間 그는 武科及第 5年後 官階가 資窮인 正 3品 驕侮將軍까지 올랐고 官職은 龍驤衛副司果(從 6品), 訓鍊院僉正(從 4品), 五衛都摠府經歷(從 4品), 宣傳官(正 3品~從 9品)등을 거쳐 1735年 7月 25일 正 3品 通訓大夫 長興縣監에 이르렀다. 그후 그는 忠武衛와 龍驤衛의 副司果를 거쳐서 1745年 10月 10日 嘉山郡守로 있다가 1749年 3月에 堂上官으로陞差 正 3品上 折衝將軍 三道統虞侯(正 3品)가 되었다. 그는 거기서 3個月間 在任하다가 龍驤衛副護軍兼洪川營將과 同兼羽林衛將을 지냈다.

李培源은 그후 1763年 1月 1일 從 2品 嘉善大夫 同知中樞府事로陞資합과 동시에 遞兒職(副護軍)을 받은 것으로 나타나 있다. 그가 官僚로 30年間 在職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實職(正職)에 있던期間은 매우 짧았으며, 그나마 華麗한 官職에는 한번도 있어보지 못하였다. 文武 差待政策때문이라 하겠다.

위史料分析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朝鮮後期, 京官들이 進退의 無常과 빈번한 人事移動으로 行政, 司法등의 實務把握이 不可能할 뿐만 아니라, 儒教本末觀에 立脚하여 道學, 禮學, 史學등과 詞章以外 分野는 알려고 하지 않자, 自然히 法律, 經濟, 天文學, 地理學, 語學, 醫學등 實生活에 긴요한 學問과 行政實務등은 中人 내지 吏胥들의 것이 되고 말았다. 中人과 吏胥들은 많은 知識과 풍부한 경력으로 國政運營 全般에 걸쳐至大한 役割을 담당하였으므로 『我國俗所謂吏胥之國也라는 말이 나오기까지 하였다. 그럼에도 不拘하고 그들은 士族들로부터 身分上의 差待와 人間의 蔑視를 받아 왔을 뿐만 아니라, 昇進의 길도 막혀 있거나 制限되고 있어 自然히 國家社會에 대한 反感을 갖게 되었고, 使命感이 缺如되는 等 不健全한 意識構造가 形成되었다. 이러한 現象을 보고 識者들은 吏胥亡國이라 우려하였으나, 星湖의 指摘과도 같이 朝鮮은 吏胥가 없이는 참시도 離持될 수 없는 나라였으니 嚴斷主義만으로 問題가 解決될 수는 없었다. 여기에 대한 대책으로 官員들의 長期勤續과 吏胥들의 短期循環補職이 主張되기도 하였으나 事實은 언제나 그 反對로 나타났고 吏胥들의 正職品官으로의 進出方案이 모색되기는 하였으나 士族官僚들의 獨占의 身分維持慾 때문에 그러한 發想이 實現될 수가 없었다. 士族官僚들이 永遠히 自己들의 手足으로만 處해있을 줄 알았던 專門職(中人)과 吏胥들 및 그 後繼者들은 그후 재빨리近代化 물결을 타고 變轉하는 새로운 環境에 適應하면서 世紀最上의 支配階層을 形成하게 된 것이다.

IV. 結 言

以上에서 先學들의 研究業績에 힘입어 朝鮮王朝의 官階·官職體系와 人事權의 實際行使者 및

그運用狀況을 살펴본 후, 여기에 덧붙쳐 國立中央圖書館 所藏 教旨와 奉教中 官僚들의 任用 昇進 轉補(除拜陞遷)에 관한 것을 無作爲로 抽出하여 全部 538枚를 分析하였다. 그結果 얻은 結論을 要約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朝鮮王朝의 官階體系는 오랜 東洋的傳統을 갖고 내려 온 것으로 멀리 周代의 九命官位公·卿·制·大夫·士에서 비롯하여, 魏晉南北朝와 隋唐을 거쳐 高麗에 들어 온 것이며, 朝鮮王朝는 麗制를 繼受한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朝鮮後期에 이르러 官品인프레 現象이 생기는 등으로 價値가 극도로 低落되었고, 그로인하여 官品의 高下는 身分의 尊卑와 不一致하게 되었다.

둘째 官職은 廣義로 流品內의 것以外 流外雜職이나 吏胥職까지 包含시켜 생각할 수 있으나, 朝鮮王朝의 官職이란 主로 流品의 것을 의미하였으며, 그것을 入仕形態에 따라 文官·武官·蔭官·專門職으로 나누고 勸務地에 따라 京官과 外官으로 나누어 본 實職과 虛職인 것이다. 實職은 다시 正職과 遷兒職으로, 虛職은 影職과 散職으로 각각 細分하여 볼수 있다. 普通 影職과 散職을 가진 者를 朝班이라 하지 않았으나, 遷兒職은 正職과 서로 바꾸어 가면서 除拜陞遷한 것이므로 그中相當數는 朝官의 職稟가 되기도 하였다. 虛職中에서는 納粟職과 老人職이 대부분이었는데 그것은 官階秩序의 紊亂化를 促進시켜 朝鮮後期 官人支配體制의 矛盾을 深化시키는 要因이 되고 있었다.

세째 影職과 散職의 擴散은 또한 實職體系內의 位階秩序에도 영향을 미쳐 清要職에 있는 堂下官들이 老成한 堂上官들을 우습게 보는 契機가 되었고 특히 銓郎들은 人事權을 獨占하여 大小官인의 人事를 주관하였다. 그러나 朝鮮後期 特히 18世紀의 40年代부터 爲政者는 銓郎의 人事薦望權을 박탈하여 堂上官에게 이를 넘겨줌으로써 人事

權이 少數權貴의 손으로 集中하게 되어 封建朝鮮의 官人支配體制의 解體를 促進하였다.

네째 朝鮮後期 京官들의 陞降轉遷은 朝更暮遞式이어서 3年이 끝나는 期間內에 무려 40餘回나 자리를 옮긴 事例가 있었고 보통의 경우에도 한 두 달에 한번씩은 補職을 變更하는 例가 많았다. 그結果 官人們은 所管業務에 대한 把握을 제대로 할수 없게 되었다. 그래서 封建朝鮮의 支配層이었던 士族官人們은 그 體制와 함께 必然의으로 没落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다섯째 同一官司에서 長期勤續하고 있었던 專門職과 吏胥들은 行政·司法·技術등 諸般事務에 대한 實權을 장악하여 國政運營의 土臺를 이룬 한편, 富를 축적하여 封建的 身分秩序를 解體하는 要素로도 作用하였다. 反面 清宦顯職의 士族官僚들은 實務에서 유리되고 變轉하는 時代의 흐름에 適應하지 못하여 發展하는 歷史와 世界的인 進退에서 落伍가 되고 말았던 것이다.

여섯째 職品以外 身分上의 品階라 할수 있는 官階가 따로 있어서, 高位者が 下級官職에 任用되어도 或은 新補職이 前補職보다 職品이 낮아도 그것이 閑職에서 清要職으로 옮기는 것이면 榮轉이라 생각할 程度였다. 따라서 이러한 官品秩序의 紊亂은 中世의 身分秩序의 動搖를 의미하는 것이다.

일곱째, 朝鮮後期의 文武差別政策으로 말미암아 武科及第者들은 거의 清要職에 任用되지 않았고 閑職에 머물거나 地方官으로 잠시 나가 있을 程度였으므로 武官들의 士氣가 극도로 抵抗되었다. 또한 大多數 武官들과 技術官등 專門職 官僚와 行政實務者들인 吏胥들은, 文官, 官人們의 멀지의 대상이 되었고, 또한 그들의 身分上昇은 극めて 제한되어, 希望을 잃게 되었으므로, 그들은 國家社會體制에 대한 저항감이 생겨 封建體制의 解體를 加速화시켰던 것이다.